

제 994호
1982.10.1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 편집 : 공 보 관 전 명 호
 전화 725-7834
 인쇄 : 서울특별시 통합발간실
 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○ 조 례

제 1688 호 :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토징수조례중개정조례... 3

제 1689 호 :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개정
 조례..... 4

제 1690 호 :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제립토지에 대한제산세불균일과세에
 관한 조례..... 6

○ 훈 령

제 582 호 : 서울특별시 민간기업체에 대한보고업 무처리 및 통제 규정 중
 개정 규정..... 6

제 583 호 : 서울특별시 중기 운영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..... 10

(이면계속)

공 람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○	고	시	
제	420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인가 11
제	421	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..... 11
제	422	호	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12
제	423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변경..... 12
제	424	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
제	425	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
제	426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14
제	427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14
제	428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15
제	429	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6
제	430	호	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..... 17
제	431	호	: 급수공사특정지역실정고시..... 17
제	432	호	: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 18
제	433	호	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 18

○	공	고	
제	434	호	: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 (연인료) 공인 신조및개각 (폐기) 등록공고 20
제	437	호	: KS 표시정지처분공고..... 23
제	438	호	: 공산품품질검사결과불합격업체공고 23
제	439	호	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공고 23
제	442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 24
제	443	호	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정정내역공람공고 25
제	444	호	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에 따른공람공고외표..... 27
제	446	호	: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결정불위한공람공고..... 27
제	448	호	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..... 28

○	강남구청공고		
제	977	호	: 관인개각공고 28

○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.10.19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688 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사용

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“별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이 조에 시행 이전에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.

시립 후생 시설 사용료

(별표)

구 분	단 위	사 용 요 율				비 고
		근로자회관	남부근로복지관, 동대문근로복지관, 중구근로복지관	공단복지관, 근로청소년회관	구 복 지 관	
숙 박	1인1박	시중여인숙형정료의 1/10	시중여인숙형정료의 1/4	-	-	여인숙점정료기준: 1실4인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요금
식 배 사 반	1인1식	후생시설요금의 1/5	후생시설요금의 2/20	후생시설요금의 1/2	-	후생시설:시청구내 후생시설을 포함(이 같음)
기 타	"	-	" 1/2	" 7/10	-	
목 욕 (대인)	1인1회	시중형정료의 1/5	시중형정료의 1/2	시중형정료의 5/8	-	소인은 대인의 1/2
이 발	"	후생시설요금의 1/10	후생시설요금의 3/10	후생시설요금의 1/2	-	

구분	단위	사 용 요 율				비 고	
		근로자회관	남부근로복지관, 동대문근로복지관, 중구근로복지관	공단복지관, 근로청소년회관	부녀복지관		
미용과	교대	1인1회	-	후생시설 이발료의 1/5	후생시설 이발료의 3/10	-	
	샴푸	"	-	"	"	-	
	파마	"	-	후생시설 이발료의 3/4	후생시설 이발료와 동일	-	
예식장	임대료	1 회	-	시중협정요금의 1/10		-	150석 기준
	장부대비	"	-	" 1/3		-	
탁아	료	1인1월	-			-	2,000원
기술교육	수당	"	-			-	3,000원
아파트	임대료	1호1월	-	-	20,000원	-	
	임대보증금	1호기준	-	-	40,000원	-	
매점	품목별 개당	-	공장도 가격에 1-15%이윤포함가격	공장도 가격에 1-15%이윤포함가격		-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689 호

서울특별시가스사업체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가스사업체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민의 생활편익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스사업자 및 도매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

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과세면제) ①가스사업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가스사업자 및 도매가스사업자(이하 "도시가스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세를 면제한다.

1. 취득세

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

2. 등록세

가. 일반가스사업자

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

나. 도매가스사업자

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등록에 대한 등록세

②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 또는 등기, 등록한 재산을 취득 또는 등기, 등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교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후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용도와 겸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는 이미 면

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추정한다.

제 3 조 (사무처리의 위임)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 4 조 (면제신청) ①이 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제는 최초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거둬토지에 대한 재산세

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
포한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㉔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690 호

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
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공유수면 매
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
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
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 2 조 (불균일과세 적용대상) 공유수
면 매립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
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자가
분양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최초
로 매립 또는 간척하여 준공인가를
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준
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
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적
용한다.

제 3 조 (적용세율) 제 2 조의 규정에 의
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법
제 188 조 제 1 항 제 1 호 (3) 목의 규
정에 불구하고 1.000 분의 3의 세
율을 적용한다.

제 4 조 (면제신청)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
하여 재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
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
료를 갖추어 재산세 납기개시 30
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
한다.

② 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
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
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
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
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
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 년 12 월 31 일까
지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민간기업체에 대한 보고업
무처리 및 통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
과 같이 발령한다.

1982.10.19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㉔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582 호

서울특별시민간기업체에 대한 보고업무
처리및통제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민간기업체에 대한 보고
업무처리 및 통제규정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(별표 1)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민간단체 정기보고 목록

지정 번호	보 고 명	보 고 종류	보고기업체명	수보기관명
1	상공회의소 현황	연 보	상 공 회 의 소	통계전산담당관실
2	적십자회원수 및 회비 모금현황	·	적 십 자 사	·
3	박물관 소장품목	·	서 울 지 부 고려대학교 회 7 거 대 학 회	·
4	발전현황	계 보	한 국 전 력	·
5	용도별 사용전력량	·	·	·
6	서울 사용전력량	연 보	·	·
7	사업별 소비전력	·	·	·
8	새마을운동 실적보고	월 보	민 간 단 체 새 마을 협 회	새 마을 지도 회
9	특정연료사용기기 시공실적 보고	기 보	대 한 보 일 러 160 개 소	연 료 과
10	연료사용기기 생산량 및 판매량 보고	·	대 한 보 일 러 160 개 소	·
11	연료사용량 보고	연 보	대 한 중 기 공 업 회 391 개 소	·
12	열관리실적 보고	·	·	·
13	석유류 판매실적 보고	월 보	석 유 관 대 업 주 구 소 협 회	도 시 가 스 과
14	사료생산 실적보고	·	천일곡산사료공장 회 16	농 축 과
15	인공수정 실적보고	반년보	서 울 우 유 조 합 인공수정소 회 2	·
16	인공수태 실적보고	·	·	·
17	운수실적 보고	월 보	버 스 조 합 회 2	운 수 1 과
18	새마을 실적보고	·	·	·

지정 번호	보 고 명	보고 종류	보고기업체명	수보기관명
19	관광호텔이용객 동태보고	월 보	서울시관광협의회	관 광 과
20	한국식요리점 운영실적 보고	"	"	"
21	극장실당 운영실적 보고	"	"	"
22	특수유흥음식점 운영실적	"	"	"
23	직장새마을운동 추진실적 보고	"	"	"
24	국내여행 알선실적 보고	"	"	"
25	국제여행사 실적보고	"	"	"
26	우유 및 유제품생산 소비상황 보고	"	서울우유협동조합 의 3	총 합 기 술 시험 연구 소
27	전지소비상황 보고서	월 보	"	"
28	공휴일 자체검사 보고서	주 보	"	"
29	원유검사결과 보고서	월 보	"	"
30	축산물 가공처리실적 보고서	기 보	한 국 식 품 의 4 개 소	"
31	축산물 검사상황 보고서	월 보	서울우유협동조합 의 6 개 소	"
32	직종별 구인구직취업현황 보고	기 보	영등포제 1 직업 안내소의 24	사 회 복 지 과 (구 청)
33	수용인원 보고	월 보	홀트양자원의 27	"
34	모자원 월보	"	모자원의 1 개 소	"
35	육아시설 월보	"	연락보건원의 33	"
36	직업보도시설 월보	"	애 우 관 의 3	"
37	탁아시설	"	성남어린이집의 18	"
38	의매업소 운영실적 보고	"	예 식 장 46 개 소 장 의 사 57	"
39	결혼상담소 월보	기 보	새살림결혼상담소 의 71	"
40	국민저축현황 보고	"	대한재보험공사 의 27	총 무 과

지정 번호	보 고 명	보 고 종류	보고기업체명	수보기관명
41	마을금고 재무보고	월 보	마을금고연합회 서울시지부	새마을지도과
42	생산동태 보고	·	쌍용양피외379	산업과(구청)
43	시장 정비정돈 보고	·	신촌상가외153	·
44	개량실적 증명보고	기 보	동진개량증명업소 외 3	·
45	유류판매실적 보고	월 보	국한주유소 협회외 17	산업과(구청)
46	공수의 업무보고	·	동고수의과병원 외 16개소	·
47	집사대상 기기검사 실적보고	·	열관디협회	·
48	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	기 보	서울식품외 48	의성과(구청)
49	쓰레기 자가수거실적 보고	월 보	유진건설외 33	청소과(구청)
50	정화조 청소작업 실적보고	·	·	·
51	일반 분뇨수거실적 보고	·	·	·
52	액상폐기물 수질검사	수 시	·	·
53	국민식수 보고	연 보	주택공사외 38	공원녹지과
54	원목시가 및 재하량조사	월 보	대일목재소외 37	·
55	민방위 장비 확보	·	대한중외제약 외 275	민방위과 (구청)
56	동원가용자원 현황파악	·	대동화학외 66	·
57	예비군 편성현황 보고	기 보	· 외 47	·
58	예비군 자원현황 보고	연 보	· 외 74	·
59	예비군 분기별 통계보고	기 보	태양금속외 3	·
60	민방위대 자원현황	반년보	태양금속외997개소	운경과
61	민방위대 훈련계획서	·	·	·
62	민방위교육 실시결과 보고	기 보	·	·
63	민 열관리사 채용보고	수 시	대한중기공업 외 391	전로과

지정 번호	보 고 명	보고 종류	보고기업채명	수보기관명
64	자동차보유 현황	수시	버스조합의 189	교통기획과
65	"	"	현대건설의 109	"
66	직장새마을 사업계획서 제출	년보	직장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	새마을지도과
67	산업동원업체 동원계획서 제출	수시	대한전선의 95	산업과(구청)
68	건축공사 공정보고서	"	대일건축의 130	건축과(구청)
69	건축물 유지관리상태 보고서	"	엠파이어호텔 의 16	"
70	푸른서울 가꾸기 실적보고	"	협지면적의 37	공원녹지과
71	임야 책임조립 관리	"	대림산업의 37	"
72	해, 공군 점열점호대상자 보고	"	대동화학의 74	민방위과(구청)
73	충원소집 신상 이동	"	"	"
74	동원지정업체 충원소집 관리	"	동아건설의 120	"
75	향토예비군 편성지침 시달	"	"	"
76	동원지정업체 인력현황 보고	"	"	"
77	민방위교육 예정표	"	광명인쇄소 의 611	"

서울특별시 중기운영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2. 10. 19.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583 호

서울특별시 중기운영관리 규정중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중기운영 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복부건설사업소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인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109호(81.4.7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설결정 및 동고시제 129호(81.4.15)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공고제 21호(82.6.4)로 실시 계획공람공고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6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호(81.12.31)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하였기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실과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18

서울특별시장

<개 요>

- 가. 사업시행지-서울특별시은평구신사동산 103-1 일대(3,446평)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-도시계획사업(학교)
- 다. 사업의규모면적-대지면적(3,446평)

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

- 1) 착수년월일 시행인가후 3개월 이내
- 2)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
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아래 권리명세-별첨(생략)
- 사.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연령-별첨(생략)
- 아. 공사실적도면-도면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1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10.18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- 2. 사업주체: 서울특별시은평구신사동1-533-1호지상권영구임대주택사업자
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, 면적 및 규모
 - 가. 위 치 : 강남구잠원동 128- 6
번지의 3필지
 - 나. 건설규모 : 아파트 12층 1동 132세대
 - 다. 대지면적 : 9,180.80㎡
 - 라. 건축연면적 : 16,731.410㎡
- 4. 사업시행기간 : 1982.10-1983.
12.31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2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시고시제 160 호(80.5.12) 및 서울시고시 제 180 호(80.5.28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공고 제 379 호(82.9.1)로 공람공고한바있는 마포구중동 신북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(81.12.31)에 의거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1982.10.19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
마포구중동 40-1호~46-5호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도시계획사업(신북국민학교진입로
개설공사) 실시계획
- 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도로개설(폭 6m, 길이 195.5m)
- 4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
서울특별시장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인가일 - 82.11.30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
소재지, 지목, 지번 및 소유권이의
의 권리명세 : 별첨 토지조서 및
건물조서 : 생략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
주소, 성명 : 별첨 토지조서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
실시계획인가변경

- 1. 서울시고시제 264 호(80.7.21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계획 인가 하교 서울시고시제 156호(81.4.29)로 실시계획인가 변경된 마포구성산동 128-7번지일대(14,143㎡) 성사중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6조, 건설부고시 제 521 호

(81.12.31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19

서울특별시장

다 음 (변경 사항)

- 가. 당초인가시 사업기간
1980.7.21 - 1981.4.30.
- 나. 변경사업기간
1980.7.21 - 1983.12.3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4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10.19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 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주체 : 중구수표동 47-6
선경종합건설(주) 대표 조종태
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,규모
가. 위치 : 강남구대치동 459번지 외 34필지

- 나. 면적 : 49,599.17 ㎡
- 다. 규모 : 아파트 14층 7동 644세대
노인정당 부대복리시설

- 4. 사업시행기간 : 82.10-83.12.3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5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 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주체 : 강남구서초동 182
(주)우성건설 대표 최승진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,규모
가. 위치 : 강남구대치동 704번지 외 167필지
- 나. 면적 : 51,768.6 ㎡
- 다. 규모 : 아파트 15층 9동 690세대
노인정당 부대복리시설
- 4. 사업시행기간
82.10 - 83.12.3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6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(81.7.4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(82.2.1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(81.12.31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20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동 55-1
- 나. 사업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서울외국인학교 교사 숙소증축
- 다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 - 1) 시행면적 : 54,800㎡ 중 277.22㎡
 - 2) 건물연면적 : 615.6㎡
 - 3) 건물층수 : 지하1층, 지상2층
 - 4) 건물구조 : 철근콘크리트
 - 5) 건물용도 : 교사숙소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55 번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 사로덕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년월일 : 1982.10

2) 준공예정년월일 : 1983.5.30

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

별첨(도면생략)

사. 수용할 토지 : 없음

아. 토지소유자 : 재단법인

서울외국인학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246 호(78.5.27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월계동 648번지일대의 학교법인 인덕학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521 호(81.12.31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월계동 648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 : 인덕공업전문대학실습장(지층-4층)

다. 사업의 규모

1) 대지면적 : 78,307㎡ (23,688평)

2) 건물면적

건축면적 기존 7,886㎡

증축 324㎡

연면적 기존 23,458㎡

증축 1,672㎡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
도봉구월계동 648번지 학교법인
인덕학원 이사장 최금봉

마. 사업시행기간 : 82.10-83.7(예정)

바. 위치 및 공사계획평면도 : 별첨
(도면생략)

* 도면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
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 (76.6.21) 로 도시계획(학교)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고시 제 172 호 (78.4.25) 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 용산구한남동산 8 번지일대(단국대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시설계획과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밀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청

가. 사업시행지 : 용산구한남동산 8 번지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
명칭 : 단국대학교 시설확충

다. 사업시행규모

1) 사업시행면적 : 140,100㎡

2) 사업변경

가) 당초

· 건축면적 - 16,768.2㎡

· 연면적 - 56,073.27㎡

· 동 수 - 18 동

· 용 도 - 교사 및 부대시설

나) 변경후

· 건축면적 - 19,420.9㎡

· 연면적 - 70,466.62㎡

· 동 수 - 20 동

· 용 도 - 교사 및 부대시설

3) 변경내역

· 예술관, 과학관 및 문헌관

· 건축면적 : 3,152.7㎡ (증)

· 연면적 : 14,393.35㎡ (증)

· 동 수 : 2 동신축 및 1 동개축

· 구 조 : 철근콘크리트라멘조

· 동별층수 및 차벽

· 예술관(신축) - 지하 1층, 지상 3층

· 건축면적 : 1,824.7㎡

<p>연면적 - 5,680.1 ㎡ 과학관 (신축) - 지하1층, 지상6층 건축면적 - 1,328 ㎡ 연 면 적 - 8,614.7 ㎡ 문화관 (증개축) 지상5층-지상5층 및 옥탑(5층개축) 연면적 - 1,118.75 ㎡</p> <p>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서울용산구한남동산 8 학교법인단국대학이사장 박정숙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착수년월일 . 과학관 및 문화관 -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. 예술관 : 1983.3.1</p> <p>2) 준공예정년월일 : 1983.8.30</p> <p>바.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: 별첨 (도면생략) 사. 사용할토지: 별첨도면과같음 (도면생략) 아. 토지소유자: 학교법인단국대학 (수용할토지 없음) 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8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</p> <p>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10.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 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. 사업주체 : (주)라이프대표 조 내 벽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. 위치 : 강동구성내동 347-2의 58필지 나. 면적 : 20,140,074 ㎡ 다. 규모 : 아파트 14 층 4 동 406 세대 상가 및 부대부리시설 4. 사업시행기간 : 82.10-83.12.31 5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결정주소서
--	--

도 로 변 경 조 서

구 분	노선명	폭원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 2 - 1	8	541.5	소 2 - 2	소 1 - 8	
변 경	소 2 - 1	8	380.5	소 3 - 2	소 1 - 8	
기 정	소 2 - 3	8	66.2	소 1 - 9	소 2 - 1	
폐 지	"	8	66.2	"	"	
기 정	소 2 - 4	8	67.7	소 1 - 9	소 2 - 1	
폐 지	"	8	67.7	"	"	
기 정	소 2 - 5	8	40	대 3 - 1	소 2 - 1	
폐 지	"	8	40	"	"	

구분	노선명	폭원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 경	소 3-1	6	66.9	소 1-9	소 2-1	
폐 지	"	6	66.9	"	"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30 호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허가

-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학동998보력 49호외 4필지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373호(82.8.24)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호(81.12.31) 권한 위임사항내부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관계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20

서울특별시장

- 사업시행지 : 서울강남구학동 998부력 49호외 4필지
-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시행
- 사업의 규모(면적)

대지면적 - 928.4 ㎡

건축면적 - 204.8 ㎡

연면적 - 1,140.6 ㎡

-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강남구청합동산 67-2 전영건설(주)대표 김 의 춘
-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착수년월일 : 82.10
 - 준공예정일 : 82.12.31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의뢰의 권리명세 (생략)
- 토지 또는 건물에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 431 호

금수공사특정지역 설정고시

서울특별시 금수조례 제 10조에 의한 금수공사 특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 한다.

1982.10.12

서울특별시장

- 위치 : 서울특별시구로구시흥동

- 3번지 법원단지일대
- 2. 시행일 : 1982.9월부터
- 3. 설정목적 : 구로구시흥동 3번지 법원단지에 대한 급수공급을 기하는데 있음.
- 4. 시행방법 : 동지역의 급수를 위한 공사비는 당시 급수조례 제 8조 2항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상하수국 급수과 및 구로구청 수도공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람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32호

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

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10.22

서울특별시장

- 1. 허가번호 : 제 1-2호
- 2. 허가년월일 : 1982.10.22
- 3. 성명 : 이수빈
- 4. 주소 : 서울강남구압정동230-5 현대아파트 79동 606호
- 5. 제조장소재지 : 서울강서구가양동92
- 6. 상호 : 제일제당주식회사

- 7. 상호 : 제일제당아미노산액비
- 8. 비료의 종류 및 품목 : 아미노산 발효부산비료(액)
- 9. 보증성분 및 기타규격
- 10. 생산능력 : 54,000톤 (년간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33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고시

- 1. 서울특별시공고 제 334호(82.7.26)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23

서울특별시

다 음

- 1. 사업시행위치 : 성북구길음동510-166 부터 같은동 517-27 까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미아로 확장공사 (지하철 4호선 407 공구일부구간)
- 3. 사업의 규모 : B=30m-35m L=70m (B=5-10m 확장)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성북구 청장) 5.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: 82.10-84.3.30	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조서
--	--

토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목	지적	면적	실제이용 상황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외 의 권리 등록사항
						소유자주소성명	관계인주소성명	
1	길음동 938-2			8 ㎡		길음동 938-2	이순철	
2	• 938-6			53 ㎡		• 503-113	윤재삼	
3	• 938-6			51 ㎡		• 938-6	김영보	
4	• 938-6			33 ㎡		• 938-6	김병희	
5	• 938-7			119 ㎡		• 938-7	윤석재	
6	• 938-9			69 ㎡		• 938-9	정구삼	
7	• 938-11 20 21, 24, 26			52 ㎡		• 938-11	홍기현	
8	• 517-2			39 ㎡		• 517-2	윤재삼	
9	• 517-27			8 ㎡		• 938-11	홍기현	
10	• 938-22			26 ㎡		• 517-2	윤재삼	

건 물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 목	지적	면적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외 의 권리 등록사항
						소유자주소성명	관계인주소성명	
1	길음동 517-20 938-6	철근콘크리트 평육계점포		1층 43㎡		길음동 938-6	김영보	
				2층 43㎡				
				3층 43㎡				
2	길음동 517-23 938-6	철근콘크리트 평육계점포		1층 35㎡		길음동 938-6	김영보	
				2층 36㎡				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 목	지적	면적	실제이 용상황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의 의 권리의 종류및내용
						소유자주소성명	관계인주소성명	
3	길음동 938-7	철근콘크리트 명옥개점포		1층 119㎡ 2층 119㎡ 3층 119㎡		길음동938-7	윤석배	
4	길음동 938-7	철근콘크리트 명옥개점포		1층 69㎡ 2층 69㎡ 3층 69㎡ 4층 69㎡		길음동938-9	정규삼	
5	길음동938-11 21 517-3	철근콘크리트 명옥개병원		1층 52㎡ 2층 52㎡ 3층 8㎡		길음동938-11	홍기현	
6	길음동 517-2	목조와즙주택		26.4㎡		길음동517-2	윤 황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34 호

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(견인료)
공인신즈및개각(폐기)등록공고























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(견인료 수납
관제용) 공인율 아래와 같이 신즈
및 개각(폐기)하여 서울특별시 외

제 관제 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에 의
거 등록하고 관인규칙 제 9 조 및 서
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
고한다.

1981.10.16
서울특별시 장

1. 공인명: 별첨
2. 사용개시(폐기)일: 1982.10.21
3. 공인의인영: 별첨

등 록 사 함			
공 인 명	인 영 규 격	사 용 개 시 일 자 (附 二)	비 고
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인 (견인료)	2 cm 정 방형	1982.10.21	신 조 등 록
· 수입금출납원인 (〃)	1.8 cm 〃	〃	〃
중부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폐 기 등 록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중로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남대문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서대문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동대문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용산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청량리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마포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영등포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강남경찰서징수관인	2 cm 〃	〃	〃
· 수입금출납원인	1.8 cm 〃	〃	〃

인 요	선 조					
부 표		서울특별시경인수입분임징수관	서울특별시경인수입금출납원인			
인 요	개 각					
부 표		중부경찰서 징수관인	중부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종로경찰서 징수관인	종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남대문경찰서 징수관인
인 요						
부 표		남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서대문경찰서 징수관인	서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동대문경찰서 징수관인	동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
인 요						
부 표		용산경찰서 징수관인	용산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청량리경찰서 징수관인	청량리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마포경찰서 징수관인
인 요						
부 표		마포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영등포경찰서 징수관인	영등포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	강남경찰서 징수관인	강남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437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.S 표시정지처분공고</p> <p>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.S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10.1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허가번호 : 2584, 2585 허가일자 : 82.2.18. 제조업체 : 신진밸브공업 (주) 소재지 : 구로구 가리봉동 444 대표자 : 박찬언</p>	<p>품 명 : 황동단조 10kg 2 / 개 나사식케이브밸브(KS22319) 황동단조 5kg 2 / 개 나사식케이브밸브(KSB2320)</p> <p>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: K.S 기준 미달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38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산품품질검사결과불합격업체공고</p> <p>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10.18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불합격 상품 및 업체명단

순번	검 사 대 상 업 체				불합격 사유
	등록번호	소재지	상 호	대표자성명	
1	17-28	강동구 신천동 231-86	영화산업사	이규환	불합격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39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공고</p> <p>1. 서울시고시제 148 호 (82. 4.16) 로 도시계획 사업 (도로) 실시계획</p>	<p>인가된 마포구 신산동 신사중학교 진입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및 동법 제 85 조 2 단 1항에 따라 521호 (81.12.31)에 의거하여 공고한다.</p>
--	--

3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
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0.20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
대신동 47번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
(학교)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
부속중학교 화장실 증축

다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
1) 면적 - 40,929.6 ㎡ 중 175.59 ㎡

2) 규모 - 건물연면적 604.89 ㎡

(지하 1, 지상 4층)

라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
서대문구대현동 11-1 학교법인 이
화학당 이사장 김 영 의

마. 사업기간

1) 착공년월일 : 1982.10.

2) 준공예정년월일 : 1983.9.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
의 소유자주소성명 : 학교법인 이
화학당 소유

사.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아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3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
인가정정내역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제 145 호 (78.6.15)
및 서울특별시고시제 681호 (78.12.23)
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
울특별시공고제 130 호 (82.3.18) 및
서울특별시고시제 224 호 (82.6.16)
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
가 고시된 동작대로 확장공사의 토
지조서 내용중 별첨과 같이 하오
부분을 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
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
14일간 일반의 공람을 공고한다.
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개별통지할것이나 그수령자적 부
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건설관리과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가. 공람장소 : 동작구청 건설관리과

나. 공람기간 : 1982.10.21-

1982.11.3 (14일간)

1982.10.21.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내 용

1. 토지조서 정정내역서 : 별첨

첨부 : 1. 토지조서 정정내역서 1부

토지조서정정내역서

일련 번호	소재 지번	지 목	지 적 (㎡)	면적 (㎡)	실세 이용 상황	변 경 전			변 경 후			
					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 외의권리 의 종류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 외의권리 의 종류	
						관계인주소성명			관계인주소성명			
12	동작동 산 18-4	임 야	907	807	일부 임야 및 잡지	도봉구수유동 518	민정자	가등기	도봉구수유동 518	민정자	가등기	
						"	마일영		"	마일영		
						목포시북교동 67	박용호		목포시북교동 67	박용호		
						성북구장위동 39-25	이병영		성북구장위동 39-25	이병영		
						강남구방배동 57-14	권원중		강남구방배동 57-14	권원중		
						도봉구미아동 310-47	홍정균		도봉구미아동 310-47	홍정균		
						서대문구구산동 2-32	성사경		영등포구여의도동 1-159 마리아파트B동209호	성사경		
						중구저동 2가 61-16	최종순		중구저동 2가 61-16	최종순		
						성동구화양동 41-5	김억제		성동구화양동 41-5	김억제		
									중구저동 2가 61-16	최종순		가등기
						동작구동작동 35	최종분		동작구동작동 35	최종분		
						서대문구북가좌동 57-1	김 원		서대문구북가좌동 57-1	김 원		
						강남구잠실 2동아파트 57동 903호	김민원		강남구잠실 2동아파트 57동 903호	김민원		
						도봉구미아동 473-35	민수원		도봉구미아동 473-35	민수원		
						" 수유동 518	마일영		" 수유동 518	마일영		가등기
강남구삼성동 차관아파 트 14동 106호	한영길	강남구삼성동산 26-2 차관아파트 14동 106호	한영길									
동작구본동 9번지	이창주	동작구본동 9번지	이창주									
동작구혹석동 170-39	권철주	삭 제										
" 본동 39-1	김재구	동작구본동 39-1	김재구									
" 본동 91	이창주	" 본동 9번지	이창주	가등기								

32-26 제 934호 시

1982.10.16. 회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44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에 따른
공람공고의뢰

1. 서울특별시 공고제 269 호('81.10.14)로 도시계획사업(시장)완료 공고된 강동구 암사동 480-1번지 현대종합시장의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.

2. 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일내에 서면으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장소: 강동구청 도시정비과.
현대종합시장

나. 공람기간: 1982.10.21-1982.11.3

1982.10.21.

서울특별시

공 랑 개 요

- 1. 사업시행지: 강동구암사동 480-1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시장)현대종합시장
- 3. 사업의 규모
 - 1) 지적: 1,000 평 (3,306㎡)

2) 건축면적: 기존 4,010.96㎡
증축 1,302.09㎡

4. 사업시행자: 강동구암사동 480-1
풍암상사(주) 대표 김희관

5. 기타사항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46 호

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결정을
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41 호(보고제)로 시행인가된 마포로 제1구역: 7지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유태형으로부터 정관계정요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조 규정의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다음과 같이 공람한다.

1982. 10. 22.

서울특별시

가. 변경내용

1) 정관(대의원제도 신설 및 조부조항수정): 별첨

나. 공람기간: 82.10.22 - 82.11.20 (30일간)

다. 공람장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재개발과

(720 - 4627)
마포로제 1 구역제 7 지구재개발조합
(716 - 4081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4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에
따른 서류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 제 415 호 (77.11.29)
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67
호 (79.4.24)로 지적승인된 월
계동 820번지 일대; 영광학원의
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서류의
공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도시계획
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
27조 2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
14일간 일반에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
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하고 본
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한
내 서면 제출하시기 바람.

1982.10.23.

서울특별시

- 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월계동 820
번지의 15필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

획사업(학교)

영광여자고등학교교사 4층 1동

다. 사업의 규모

1) 대지면적 : 49,962 m²

2) 건축면적 : 1,460 m²

면적 : 6,237 m²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도봉구월
계동 820번지

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 이영순

마. 사업시행기간(예정) :

1982.10 - 1983.5

◎강남구청공고제 977 호

공인개각공고



강남구내곡동장 직인이 82.10.14 자
분실되어 구인을 폐기하고 개각인을
재교부하였기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
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의 규정에
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2.10.19.

강남구청장

다 음

1. 사용개시일자 : 1982.10.19
2. 관인의 인영

<p>안 영</p>	 <p>(구인영)</p>	 <p>(신인영)</p>	<p>관악구기획감사과 이 상 립 지 방 행 정 서 기</p> <p>지방공사 강남병원 설립추진요원을 해제함.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</p>
<p>공인명</p>	<p>강남구내곡동장직인 (사무용)</p>		<p>령제 537 호</p> <p>운 영 과 서 기 관</p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사 령</p> </div>			<p>국가공무원법제 71 조 제 1 한 1 호 규 정에 의거 복직을 명함. (82.10.16 - 83.4.15) 서울특별시 관</p>
<p>◎ 1982년 10월 16일자 령제 536 호</p> <p>영등포구기획감사과 이 홍 지 방 행 정 주 사 보</p>			<p>◎ 1982.10.15자 령제 538 호</p> <p>서울특별시상하수국국장직무대리 토 목 기 정 이 기 항</p>
<p>지방공사 강남병원 설립추진요원 을 해제함.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</p> <p>관악구기획감사과 조 방 순 지 방 행 정 주 사 보</p>			<p>시설부기감에 임함. 서울특별시 상하수국 국장대 보함. 대 톤 령</p>
<p>지방공사 강남병원 설립추진요원 을 해제함.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</p>			<p>◎ 1982년 10월 20일자 령제 539 호</p> <p>장성군농촌지도소 이 상 길 농 촌 지 도 사 보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.</p>

◎ 1982년 10월 18일자				형제 540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	
이 수 현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 2, 3호의 규정에 외거 파 견에 처함.	총 로 구	지방토목기사	
김 유 성	"	"	지방건축기원보	
변 영 하	"	"	지방농림기사	
◎ 1982년 10월 20일자				형제 541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	
손 기 만	종합건설본부 파견근무 (82.10.20 - 83.10.19) 한강종합개발추진요원	지 하철도와 공정관리제장	지방토목기사	
김 남 훈	"	시설계획과	"	
남 승 운	"	가로계획 1 제장	"	
이 연 관	"	수원기전과 시설제장	지방행정사무관	
김 구 환	"	감 동 구	지방토목기사	
신 등 우	"	시 민봉사실장	"	
길 영 남	"	도 봉 구	"	
서 성 기	"	도 로 과	"	
김 연 호	"	은 평 구	"	
김 성 환	"	구 로 구	"	
엄 판 남	"	시설계획과	"	
송 근 백	"	마 포 구	"	
조 정 호	"	총 로 구	지방토목기사보	
이 호 찬	"	구획정리과	"	
		수원기전과	"	
		영동포구	"	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상현	종합건설본부 파견근무 (82.10.20 - 83.10.19) (한강종합개발추진요원)	도봉구	지방토목기사보 " "
안희천	"	동대문구	"
김인근	"	시립운동장	"
조보연	"	성북구	"
이봉호	"	주택개발과	"
방준갑	"	동대문구	지방토목기사
정래현	"	동작구	지방토목기사
최인석	"	강동구	지방행정주사
임종순	"	중구	"
신규식	"	도봉구	지방행정주사보
이상득	"	구로구	"

<p>◎ 1982년 10월 21일자 영제 511호</p> <p>시정개발담당관 박 세 용</p> <p>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원예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	<p>◎ 1982년 10월 25일자 영제 513호</p> <p>중구남대문 5가동 김 정 순</p> <p>지방행정서기</p> <p>충청북도 천원군 전술을 면함.</p>
--	--

◎ 1982년 10월 20일자 영제 514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송상영	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. 5호봉을 급함. 건설관리국 근무를 명함.	신 구	
홍세광	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.	"	

성 명	발 명 사 함	현 부 서	직 급
차 광 제	9호봉을 급합. 강서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.	신	급
이 인 행	5호봉을 급합. 건설관리국 근무를 명함.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. 8호봉을 급합. 도봉구 근무를 명함.	"	
© 1982년 10월 21일자		명계 545 호	
성 명	발 명 사 함	현 부 서	직 급
정 미 옥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봉계전산담당관	지방별정직 8 급상당
이 연 옥	"	"	"
한 남 숙	"	아동병원	지방별정직 7 급상당
서울특별시장			